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35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채현일 · 노종면 · 한민수
김병주 · 양부남 · 한병도
모경종 · 신정훈 · 차지호
조승래 · 서미화 · 한준호
정준호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신체·인격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4조 신설 등).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82조 및 제83조”를 “제82조,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67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마약류검사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다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이러한 검사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마약류의 제조·수출입·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마약류의 수사·단속·수거·압류·몰수 등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담당 직무의 특성이나 책임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

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u>제82조 및 제83조에</u>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 ----- ----- ----- ----- ----- ----- ----- ----- ----- <u>제82조, 제83조 및 제84조</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생략)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1. ~ 3. (생략)

<신설>

<신설>

③ ~ ⑧ (생략)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 라. (생략)

<신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2. · 3.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마약류검사 실시) 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
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
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
으며, 소속 공무원은 이러한
검사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

2. 마약류의 제조 · 수출입 · 관
리 등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

3. 마약류의 수사 · 단속 · 수거
· 압류 · 몰수 등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담당 직무의 특성

	<u>이나 책임도를 고려하여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u> ② <u>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u> <u>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u> <u>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
--	---